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(예정)일: 2026.06.15

2. 개정 내용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조~제12조 <생략></p> <p>제13조(신탁보수)</p> <p>① 신탁보수는 이 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중 운용자산별 신탁보수와 고유계정대에 대한 신탁보수의 합으로 아래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<신설></p> <p>운용자산별 신탁보수 = 운용자산평균잔액 x 신탁보수율 연()% x 자산운용기간(일수) / 1년</p> <p>고유계정대에 대한 신탁보수 = 고유계정대평균잔액 x 신탁보수율 연()% x 자산운용기간(일수) / 1년</p> </div> <p>② 운용자산평균잔액(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운용자산평균평가액, 그 이외 운용방법인 경우 운용자산평균매입액)은 일별 운용자산액을 자산운용기간(일수)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자산운용기간(일수)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</p> <p>③ 운용자산별 신탁보수는 별도 작성하는 운용지시서에 따른다.</p> <p>④ 본 조에서 운용자산별 자산운용기간(일수)계산은 자산의 최초 매입 결제일로부터 자산의 최종 매도결제일(상한일)전일까지로 한다.</p> <p>⑤ 본 조에서 신탁기간(일수)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보수 차감일부터 제6항에서 정한 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.</p> <p>⑥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또는 중도인출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에 신</p>	<p>제1조~제12조 <좌동></p> <p>제13조(신탁보수)</p> <p>① 신탁보수는 아래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운용자산별 선취신탁보수, 후취신탁보수 및 고유계정대에 대한 신탁보수의 합으로 한다.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운용자산별 선취신탁보수 = 운용지시액 x 선취신탁보수율 (%)</p> <p>운용자산별 후취신탁보수 = 운용자산평균잔액 x 후취신탁보수율 (연 %) x 자산운용기간(일수) / 1년</p> <p>고유계정대에 대한 신탁보수 = 고유계정대평균잔액 x 신탁보수율 (연 0.1%) x 신탁기간(일수) / 1년</p> </div> <p>② 운용자산평균잔액은 일별 운용자산원본잔액을 자산운용기간(일수) 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자산운용기간(일수)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</p> <p>③ 운용자산별 선취신탁보수율 및 후취신탁보수율은 해당 자산의 운용자산설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④ 본 조에서 운용자산별 자산운용기간(일수)은 해당 자산의 최초 매입일로부터 최종 매도일(상한일) 전일까지로 계산한다.</p> <p>⑤ 본 조에서 신탁기간(일수)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보수 차감일부터 제6항에서 정한 보수 수령일 또는 요구한 날의 전일까지로 계산한다.</p> <p>⑥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 또는 중도인출에 따라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에 신</p>	<p>신탁보수내 선취보수에 대한 내용 추가 (당행 일반특정금전신탁의 보수 체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)</p> <p>운용자산평균잔액 정의 변경(당행 일반특정금전신탁의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)</p> <p>문구 정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
<p>탁재산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<신설></p> <p>제14조~제31조 <생략></p> <p>[별표1] 신탁재산 운용방법 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(1.내지 7.에서 정한 방법)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[별표2]의 신탁재산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14 810 958 1002"> <tr> <td>1.집합투자증권</td> <td>2.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*</td> <td>3.환매조건부채권</td> <td>4.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</td> </tr> <tr> <td>5.예금·적금·예탁금</td> <td>6.그 밖의 금융 기관 예치</td> <td>7.주권상장법인의 주식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<p><신설></p> <p>*「소득세법」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</p> <p>-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신탁기간 끝나는 날 이전에 만기가 다 된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하며,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 등 모든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합니다.</p>	1.집합투자증권	2.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*	3.환매조건부채권	4.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	5.예금·적금·예탁금	6.그 밖의 금융 기관 예치	7.주권상장법인의 주식		<p>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⑦ 각 운용자산별 선취신탁보수의 환급은 만기가 있는 운용자산에 한하여 적용하며, 위탁자가 해당 자산을 만기 이전에 중도환매하는 경우 수탁자는 자산 만기일까지 미경과 자산운용기간에 해당하는 선취신탁보수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.</p> <p>제14조~제31조 <좌동></p> <p>[별표1] 신탁재산 운용방법 위탁자는 다음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[별표2]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에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90 810 1834 1010"> <tr> <td>1. 환매조건부채권</td> <td>2.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</td> <td>3. 예금·적금·예탁금</td> <td>4. 그 밖의 금융 기관 예치</td> </tr> <tr> <td>5. 주권상장법인의 주식</td> <td>6. ETF</td> <td>7. 수익증권</td> <td>8. ELS</td> </tr> <tr> <td>9. DLS</td> <td>10. ELB</td> <td>11. DLB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<p>- ETF, 수익증권은 「소득세법」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해당됩니다.</p> <p>- ELS, DLS, ELB, DLB는 「소득세법」제17조제1항제5호의 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에 해당됩니다.</p> <p>-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신탁기간 끝나는 날 이전에 만기가 다 된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하며,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이자 수익의 감소 등 모든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합니다.</p>	1. 환매조건부채권	2.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	3. 예금·적금·예탁금	4. 그 밖의 금융 기관 예치	5. 주권상장법인의 주식	6. ETF	7. 수익증권	8. ELS	9. DLS	10. ELB	11. DLB		<p>선취신탁보수 환급 내용 설명 신설</p> <p>문구수정</p> <p>신탁재산 구체화. 번호변경</p> <p>설명내용 구체화</p>
1.집합투자증권	2.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*	3.환매조건부채권	4.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																			
5.예금·적금·예탁금	6.그 밖의 금융 기관 예치	7.주권상장법인의 주식																				
1. 환매조건부채권	2.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	3. 예금·적금·예탁금	4. 그 밖의 금융 기관 예치																			
5. 주권상장법인의 주식	6. ETF	7. 수익증권	8. ELS																			
9. DLS	10. ELB	11. DLB		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2]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</p> <p>귀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7 343 945 520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[별표2]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</th> <th colspan="5">세부내용(고객자필기재)</th> </tr> <tr> <th>운용방법 [별표1]</th> <th>위험등급</th> <th>자산명</th> <th>운용지시 구분</th> <th>비율</th> <th>금액</th> <th>보수율 (연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일회성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계속성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신설></p>	[별표2]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		세부내용(고객자필기재)					운용방법 [별표1]	위험등급	자산명	운용지시 구분	비율	금액	보수율 (연%)				일회성							계속성				<p>[별표2]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</p> <p>귀사와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87 343 1825 520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[별표2]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</th> <th colspan="5">세부내용(고객자필기재)</th> </tr> <tr> <th>운용방법 [별표1]</th> <th>위험등급</th> <th>자산명</th> <th>운용지시 구분</th> <th>비율</th> <th>금액</th> <th>보수율* (%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일회성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계속성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보수율은 각 운용자산별 운용자산설명서에 기재된 보수율을 따르며, 선취보수율(%)과 후취보수율(연 %)로 구성됩니다.</p>	[별표2]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		세부내용(고객자필기재)					운용방법 [별표1]	위험등급	자산명	운용지시 구분	비율	금액	보수율* (%)				일회성							계속성				<p>보수율 설명 문구 추가</p>
[별표2]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		세부내용(고객자필기재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용방법 [별표1]	위험등급	자산명	운용지시 구분	비율	금액	보수율 (연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일회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계속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2]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		세부내용(고객자필기재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운용방법 [별표1]	위험등급	자산명	운용지시 구분	비율	금액	보수율* 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일회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계속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